

2025년 청년·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1 신청

1. 사업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에서 온라인 신청
- ② 선정자 발표 후 대출 신청(은행지점 방문)
 - ※ 본인의 소득증빙서류와 계약 예정 물건지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갖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한도 및 대상주택의 대출가능 여부 등 사전상담 가능

2. 신청유형별 조건에 부합되면 선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착순 모집인가요?

일일 신청건수가 20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 다른 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순차 접수 및 심사)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 초반에 신청이 집중되어 사업이 조기 종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해연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일일 신청건수 제한으로 불편함을 겪으실 수도 있으나 지원사업의 중단을 피하고 계속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신청자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사 시기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신청바랍니다.

4.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어 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었을 경우, 다음날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가능한 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전 9시에 신청이 시작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 불가합니다.**

5. 신청하고 서류심사 선정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이자지원 사업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접수가 되면 접수상태로 표시되며 **7일 내외 심사** 완료 후에는 신청자 휴대전화로 SMS가 발송됩니다.
심사완료 후 제외 또는 적격으로 표시 됩니다.
※ 작성완료 후 '수정'버튼을 누르면 최종 수정한 시간이 최종적으로 작성완료한 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심사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작성완료 후 수정사항이 없다면 가급적 수정버튼 누르는 것은 지양하십시오.

6. 신청상태가 ‘보완’ 상태일 때 언제까지 서류를 보완해야 하나요?

‘보완’으로 상태 변경시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7일 이내) 서류를 보완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서류를 보완처리 하지 않으면 기제출한 증빙서류 기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 장기 미보완시 선정대상에서 제외처리 될 수 있습니다.

7. 이전에 사업에 선정되어 대출을 받은 후, 전액 상환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 다시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1)대학원생,취업준비생, (2)취창업자로 지원받은 경우라면 청년유형으로는 신규신청 불가하나,
청년부부 유형으로는 신규신청 가능합니다. (역으로 청년부부유형 지원받은 경우 청년유형 신규신청 가능)
다만, 동일유형으로 기 수혜자임이 확인될 시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가 진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타 지역에 살지만 대전시로 이사 갈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대전시에 주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공고상의 자격요건(대전소재 대학(원)또는 직장(재직,재직)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 후 대출 실행하고 1개월 내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로 전입신고 필수

9. 퇴직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0. 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기재되면 취창업자로 신청하시고,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기재되면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주권, 분양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배우자 포함) 명의 **소유권 보존(이전)등기 또는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됨에 따라 신청이 불가합니다.

12. 청년유형과 청년부부 유형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두 전형의 동시 신청은 불가하나, 기존에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여 대출실행 후 상환이 완료된 상태라면 청년부부 유형으로 신규신청 가능합니다.

13. 청년부부는 신청인이 무주택자이면 가능한가요?

아니요.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14. 현재 이혼 상태인 경우 참여 가능한가요?

네. 이혼 상태이신 경우 청년 유형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배우자 없을시 청년 유형 인정

15. 연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연소득 기준이며, 연소득에는 상여금, 포상금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16. 소득이 없어도 선정이 되면 대출 가능한가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자의 연소득이 4천5백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되므로,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금액이 적을 수 있음(최대 3천만원)

17. 현재 39세이고 곧 40세가 되는데 사업신청(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현재 39세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나 **선정 후 은행 보증 신청일 기준 39세를 초과하면 대출 실행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실행 후 39세를 초과하더라도 대출 종료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장 신청시 기존 대출 종료일 기준 39세 이하 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18.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❶ 졸업예정자(유예자 포함)의 경우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❷ 소득에 따른 유형이 헷갈릴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예1) 졸업예정자의 인턴, 혹은 대학원생이지만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면 직장인, 그 외는 대학(원)생으로 신청

예2) 퇴사 후 이직 준비중인 경우 : ☞ 취업준비생으로 신청

19.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대전시에서 실시 중인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동시에 사업 수혜는 불가하나,
사업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20. 기존 거주지에서 명의자 변경의 경우도 새로운 임차계약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기존 거주지에서 명의자 변경, 전·월세 전환, 계약 갱신의 경우 새로운 임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제출서류

21.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소득금액증명: 홈택스>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또는 홈택스(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2. 사회초년생이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로 대체 가능할까요?

재직기간부터 직장에서 발급하는 갑종근로소득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사(이직) 후 1개월 이상 근무 후 소득증빙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회사 직인이 필수입니다.

23. 프리랜서는 어떤 서류를 내야할까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로 표기되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이나 재직증명서(보험업, 학원강사 등 발급 가능한 경우) 또는 위촉계약서와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퇴직자는 어떤 서류를 내야할까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전 직장의 갑종근로소득증명서를 제출 바랍니다.
(2024년 귀속분)

25. 서류 제출 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한가요?

선명하게 촬영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내용 분별이 어려울 경우 승인거부 사유가 됩니다.

26. 어떤 형식으로 서류를 업로드 하면 되나요?

PDF를 권장합니다.(압축 및 암호 해제) 1장일 경우에는 JPG도 가능합니다.

27. 업로드할 파일이 여러장일 경우 어떻게 올리면 되나요?

PDF파일로 변경 후, 하나의 PDF로 결합하여 업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압축파일 불가)

28. 부모소득금액증명은 두 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한 분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두 분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년도 퇴직으로 인한 무소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9. 부모님이 이혼/사망/실종 상태인 경우에도 두 분 소득금액증명원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1)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父) 또는 모(母)를 신청자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2)본인을 신청자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고,
3)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父) 혹은 모(母)의 소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모님 두 분 다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님 중 한분(본인의 부양가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30. 재외국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외국민(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 포함)의 경우 보증규정 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31.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셨는데, 부모소득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1)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부(父) 혹은 친모(母)를 신청자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2)본인을 신청자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고,
3)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부(父) 혹은 친모(母)의 소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모님 두 분 다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님 중 한분(본인의 부양가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 부모님과 재혼하신 분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그 분의 소득증명서류는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대출 이전

32. 신청한 융자금액 모두 대출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신용도, 소득유무, 임차물건지 근저당 설정 등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33. 대출가능한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고객별 연소득 등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이내로 **최대 1억원(청년부부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고객별 대출가능금액은 협약은행(하나은행 취급지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대략적인 소득대비 보증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택보증 > 예상 보증금액 조회 > 전세자금보증)

34. 대출상담은 하나은행 어느 지점을 방문해야 되나요?

대출취급 지점은 중구(대흥동지점), 서구(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유성구(유성구청지점), 동구(가오동지점), 대덕구(오정동지점) 6개 지점이며, 이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35. 은행에서 이미 전월세보증금대출 (버팀목 대출 등)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해서 중복대출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중복대출은 불가**합니다.
이용 중인 대출을 전액 상환 후 신청 가능합니다.

36. 집 주인의 대출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단, 대출 실행 시 계약 확인을 위해 은행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보증금을 충당할 것을 미리 집주인에게 알리시면 좋습니다.

37. 작년도 사업 선정자입니다. 보증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선정되어 이미 지원을 받고있는 지원자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도 최초 실행한 대출에서 추가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38. 2025년부터 청년부부의 경우 융자한도가 2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기존 대상자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융자한도 2억원은 2025년 사업 공고 이후 선정된 대상자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장신청자의 경우는 최초 실행한 대출금에서 **증액 불가**합니다.

39. 90일(대출가능기간) 이내에 대출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일(시 대출추천)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단, 기간 내 포기서를 제출(이자지원 홈페이지: <https://djhousing.or.kr> 온라인 제출)한 경우 다음 신청자 모집 시 지원 및 재선발이 가능합니다.

40. 대출금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41.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고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대출금리는 연 기준금리 **COFIX(6개월) + (가산금리)2.1%** (대출 실행일 기준)입니다. 이 중 최대 3.75%를 대전시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가 대출자가 부담하는 금리입니다.
※ 협약이 되어 있는 6개 지점에서만 대출을 실행하셔야 가능한 금리입니다.

42. 변동금리인가요? 고정금리인가요?

변동금리이며, 공고시점 및 대출 실행일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43. 보증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합니다.

44. 보증료가 있나요? 얼마인가요?

보증료는 소득 등에 따라 대출금의 0.02%~0.40% 가 적용되며 고객이 부담합니다.

4 대출 이후

45.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① 만기 30~45일 전 은행에서 만기 연락
- ② 이자지원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에 연장신청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서류 검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3주 전 제출** 추천하며, 만기일 임박 시 별도 연락(☎042-719-8431)하여 확인 필요
- ③ 서류심사 적격 통보 후 은행에 연장실행 (최초 대출금액 10%이상 상환)

46. 사업 선정 당시와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연장이 가능할까요?

신청당시 취·창업자였으나 연장 시 퇴사(폐업)하여 취업준비생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대학생(취업준비생)이었으나 취·창업 한 경우 연장시점 공고상의 유형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동일 유형 내 연장신청 가능)
다만, 청년유형에서 청년부부유형으로의 연장은 불가하며, 신규 계약물에 대하여 신규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47. 청년전형으로 지원을 받던 도중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정자가 대출 실행 후 결혼을 해도 대출기간 동안은 청년 유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규목적물에 대하여 청년부부 유형으로 신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48. 사후관리 / 선정취소

신청자 의무사항(대출금 목적 외 사용, 지원조건 위반 등)을 어기거나 분기별 사후관리 결과 지원위반 확인 시, 용자 추천 취소 및 위약금 지급해야하며, 기지원 이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진행할 예정입니다.

49. 지원받는 중에 이사를 가도 될까요? (연장과 이사 동시 진행 대상자 포함)

대전시 내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물건지변경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하고, 재단 및 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주택이 대출대상 주택에 적합한지 등 대출받으신 해당지점과 사전 상담)
단, 대전시 외로 전출 시 해당일자 이후로 지원정지 및 이자환수가 진행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0.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 또는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하며, 임차보증금 증액 등으로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 다른상품으로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유무를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추가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51.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단, 대출 잔여기간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지원받는 중 주택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업은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중 주택 소유가 확인이 되면 해당일자 이후로 지원정지 및 이자환수가 진행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주택 소유 이전에 대출금 전체 상환 혹은 타 대출 상품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5 대상주택

53. 전월세 전환율 5% 이하 전·월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전세금 = [(월세×12개월) ÷ 전월세 전환율] + 보증금 >

○ 예시: 월세가 50만원, 보증금이 50,000,000원일 때 전세금 계산

- 전세금 = [(월세×12개월) ÷ 전월세 전환율] + 보증금

= [(500,000원×12개월)÷0.05] + 50,000,000원 = 170,000,000원

※ 포털사이트에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입력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54. 계약을 언제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언제 필요한가요?)

시에 사업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 선정 이후 90일 내에 본인 소득증빙서류, 계약예정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갖고
은행에서 **사전심사**를 거친 후 **대출한도에 따라 가격에 맞는 주택을 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대출을 처음 받아보는 경우 시에 사업신청 전 미리 취급지점 은행에 문의 가능합니다.
(사업신청 → 선정 후 90일 내로 사전심사, 임대차계약 후 대출심사(1개월 소요) 및 대출실행)

55. 선정 되었음에도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계약취소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대출거절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계약 시 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본 계약은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을 전제로 하는 계약으로,
이 사업을 통해 000만원의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는 내용을 넣으시길 권장합니다.

56. 대상자 선정 후 주택을 계약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대전시 내 위치해야 합니다.

-주택(아파트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단,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신청할 수 없으니 건축물 대장을 통해 실제주택 유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에 따른 최대 월세액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서, 안전한 주택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계약 전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소득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하나은행에서 사전 상담 받기를 권고합니다.

※ 계약서상 주택용도가 '다가구', '원룸'으로 기재된 경우 실제 주택유형은 '다중주택'
일 수 있으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 바랍니다.

※ 대출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오니, 주택계약 시에는 꼼꼼하게 기준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57.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주택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해당 층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58.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볼 수 있으며, 임대인이 오피스텔 소유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볼 수 있습니다.

59. 공고일 전에 계약한 주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주택계약일이 공고일 이후인 계약 예정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선정 후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은행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이어서 해당 물건지가 대출 실행이 가능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60. 거주 중인 주택에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미 전입신고 하고 거주중인 주택은 계약을 연장하시거나 보증금 증액 등 재계약을 하셔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규로 임차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신규 임차: 기존 거주지에서 관내 다른 주소지로 주소 변경 하는 경우
- 기존 거주지에서 월세 또는 전·월세 전환하면서 현 주소지 유지 하는 경우 신청 불가

61. 임대차계약 시 가족 간 거래도 가능한가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보증규정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62. 공동명의 계약도 가능한가요?

신청인 단독 계약만 가능하며 **공동명의 계약의 경우 대출 불가능한 점**을 반드시 인지 바랍니다.

63. 건축물 대장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라고 되어있는데 대출이 가능할까요?

다가구, 다세대 주택도 가능합니다.
단, 다가구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다중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부등본 상 임차 대상지에 근저당 설정(기 대출금액, 임차보증금 반환 순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향후 보증금 반환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4. 다중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다중주택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을 보면 다중주택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용도가 '단독주택(다중주택)'이라고 표기되어있는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지원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다중주택은 불법개조(독립적인 취사 시설 설치 등)로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의 주거안정보호 및 주거환경을 위해 대상주택 중 '다중주택'을 제외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청년부부

65.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각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에 내방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온라인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6. 태아의 경우도 자녀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태아도 자녀 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임신사실확인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은행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67. 임신한 경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임신사실확인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은행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68.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도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협약은행에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연소득과 무주택여부 확인 후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69. 대출 중 자녀수가 변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추가 이자지원은 신청 당시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 중 자녀 수가 증가하는 경우 대출 연장 시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이자율을 재산정합니다.

대출기간 중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으며, 연장심사 신청 시 해당내용 증빙을 통해 반영됩니다.

70. 대출 중 이혼 또는 사별하는 경우 이자지원은?

대출기간 중 이혼 또는 사별하는 경우 약정기간까지는 청년부부유형으로 이자지원 가능하나, 이후 연장은 어려우며 약정기간 종료 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주택에 대하여 청년유형으로 재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71.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당해 사업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법적으로 부부인 경우에 지원 가능 합니다.
향후 3개월 내에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42-270-0831)